

심 사 보 고 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0
----------	-----

2020. 9. 16.(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9월 4일

-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배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2011년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에 반영,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안)은 민간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분양한 토지에 대해 일부 기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입주계약서에 의거 부지를 환수하여 국책사업 및 공공사업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공유재산(임야) 교환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괴산군 소유의 군유림과 국립공원 대체공유지로 편입되는 도유림의 교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0. ~ 2024.
- 규 모 : 부지 15,406㎡
- 사 업 비 : 7,500백만원(도비 3,000, 시비 4,500)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33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0. 9. ~ 10.
- 규 모 : 부지 17,112.5㎡
- 사 업 비 : 3,403백만원(최초 부지 분양금액)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5-1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 규 모 : 임야 711,481㎡
- 사 업 비 : 1,273백만원

□ 재산의 처분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5-3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 규 모 : 임야 774,545m²
- 사 업 비 : 945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 첫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의 건은,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2010년부터 추진한 충청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 미래해양관련 교육·문화·과학시설을 조성하여 내륙지역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첨단해양 과학기술과 해양과학을 접목시킨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임.
 - 건립 부지는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15,406m²로 부지 매입비는 75억원(도비 30, 시비 45)이며,
 - 미래해양과학관 신축은 총사업비 971억원(국비)을 투입하여 2025년 개관할 예정으로,
 - 부지 취득은 부지 조성원가의 63%선에서 충북개발공사와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둘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의 건으로,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바이오밸리의 중심 연구단지로 국책 연구소, 기업 및 연구개발지원기관 참여 등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의 거점지역 임.

- 금회 환수 필지는 2018년과 2019년에 분양한 2개기업(주알테오젠, 주듀켄바이오연구소)의 입주포기로 입주계약에 따라 환수조치하는 내용임.
- 환수 필지는 관리기본계획과 입주계약에 따라 최초분양가로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셋째,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

- 괴산군에서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여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유림과의 교환을 요청한 것으로,
- 괴산군에서 제시한 대상토지는 임목상태가 양호하고 기존 도유림과 연결되어 있어 효율적인 도유림 경영이 가능한 토지임.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재산의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 도와 괴산군과의 업무협조와 괴산군의 지역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괴산군 임야와 교환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90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0년 8월 26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90
----------	-----

제출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2011년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에 반영,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안은 민간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분양한 토지에 대해 일부 기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입주계약서에 의거 부지를 환수하여 국책사업 및 공공사업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공유재산(임야) 교환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괴산군의 군유림과 국립공원 대체공유지로 편입되는 도유림의 교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20. ~ 2024.
- 규모 : 부지 15,406㎡
- 사업비 : 7,500백만원(도비 3,000, 시비 4,500)
- 취득사유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33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0. 9. ~ 10.
- 규 모 : 부지 17,112.5m²
- 사 업 비 : 3,403백만원(최초 부지 분양금액)
- 취득사유 : 일부 기업 입주포기로 입주계약에 따라 환수조치.
향후 국책사업 및 공공사업 등으로 활용.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산15-1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 규 모 : 임야 711,481m²
- 사 업 비 : 1,273,551백만원
- 취득사유 : 임목상태가 양호, 도유림 집단화로 산림경영 용이

□ 재산의 처분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5-3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 규 모 : 임야 774,545m²
- 사 업 비 : 944,945백만원
- 처분사유 :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라 괴산군에서 민원해소 차원 요청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변경)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건	32,518.5	10,902,859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정상동 12-4번지 일원	15,406	7,500,000	2020~2024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취득	충북개발 공사	
	건물							
	기타							
2	토지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41 등 2필지	17,112.5	3,402,859	2020	국책기관 유치 및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주)알테오젠 등 2회사	환수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